

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장비(영상감시장치) 설치 행정예고

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단속장비(영상감시장치)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니,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8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장



1. 공 고 명 :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장비(영상감시장치) 설치 행정예고
2. 설치목적 : 음성안내와 영상녹화가 가능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(영상감시장치)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3. 근거법규
 -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나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)
 - 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 - 라. 「행정절차법」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4. 공고기간 : 2021. 8. 27. ~ 2021. 9. 16.(20일간)
5. 설치장소 : 중구 청구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3개소
 - 가. 청구로3길 15-1
 - 나. 다산로28가길 28
 - 다. 청구로1길 39

6. 의견제출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생년
월일, 전화번호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 방문제출 가능

라. 제 출 처 : 청구동 주민센터 동정부2팀

- 우편 : (우)04591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길 55 청구동주민센터 동정부2팀

※우편은 제출기한(2021. 9. 16.)까지 도착하여야 함.

- 팩스 : 02-3396-8971

마. 제출양식 : 의견제출서 붙임 서식

바. 문의 : 청구동 주민센터 동정부2팀(☎02-3396-6804)

사.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
간주하여 처리함.